

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. 10. 25 선고 2018가단226885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]

전 문

원고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우

담당변호사 이태훈, 최찬욱

피고1. B

2. C

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진국, 황인서

변론 종결2019. 10. 11.

판결 선고2019. 10. 25.

주 문

1. 이 사건 소 중 '피고 C는 별지 1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 도면 기재 28, 29, 30, 31, 32, 33, 34, 35, 36, 37, 38, 39, 56, 55, 57, 58, 59, 60, 61, 62, 63, 2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"ㄴ" 부분 토지 256㎡ 지상에 설치된 지장물 일체를 철거하라'는 부분과 '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1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 도면 기재 39, 40, 41, 42, 43, 44, 45, 46, 47, 48, 49, 50, 51, 52, 53, 54, 55, 56, 3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"ㄷ" 부분 토지 655㎡ 지상에 설치된 지장물 일체를 철거하라'는 부분은 모두 각하한다.

2. 피고 C는 원고에게,

가. 별지 1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 도면 기재 28, 29, 30, 31, 32, 33, 34, 35, 36, 37, 38, 39, 56, 55, 57, 58, 59, 60, 61, 62, 63, 2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"ㄴ" 부분 토지 256㎡ 지상에 설치된 같은 도면 기재 28, 29, 64, 63, 2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① 부분 블록조 창고 5㎡와

같은 도면 기재 65, 66, 67, 68, 69, 70, 71, 6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② 부분 블록조 단층주택 112㎡를 각 철거하고,

나. 별지 1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 도면 기재 28, 29, 30, 31, 32, 33, 34, 35, 36, 37, 38, 39, 56, 55, 57, 58, 59, 60, 61, 62, 63, 2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"ㄴ" 부분 토지 256㎡를 인도하라.

3. 피고 B은 원고에게,

가. 별지 1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 도면 기재 39, 40, 41, 42, 43, 44, 45, 46, 47, 48, 49, 50, 51, 52, 53, 54, 55, 56, 3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"ㄷ" 부분 토지 655㎡ 지상에 설치된 같은 도면 기재 72, 73, 74, 75, 76, 77, 78, 79, 80, 81, 82, 7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③ 부분 블록조 단층주택 69㎡, 같은 도면 기재 83, 84, 85, 86, 8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④ 부분 비닐하우스 26㎡, 같은 도면 기재 87, 88, 89, 90, 8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⑤ 부분 조립식 건물 22㎡, 같은 도면 기재 91, 92, 93, 94, 95, 96, 9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⑥ 부분 철재기둥 그물망 구조 닭장 93㎡, 같은 도면 기재 97, 98, 99, 100, 9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⑦ 부분 비닐하우스 27㎡를 각 철거하고,

나. 별지 1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 도면 기재 39, 40, 41, 42, 43, 44, 45, 46, 47, 48, 49, 50, 51, 52, 53, 54, 55, 56, 3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"ㄷ" 부분 토지 655㎡를 인도하라.

4. 소송비용 중 1/10은 원고가,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.

5. 제2, 3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 제2, 3항 및 피고 C는 별지 1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 도면 기재 28, 29, 30, 31, 32, 33, 34, 35, 36, 37, 38, 39, 56, 55, 57, 58, 59, 60, 61, 62, 63, 2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"ㄴ" 부분 토지 256㎡ 지상에 설치된 지장물 일체를 철거하고,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1 기재 부동산 중

별지 2 도면 기재 39, 40, 41, 42, 43, 44, 45, 46, 47, 48, 49, 50, 51, 52, 53, 54, 55, 56, 3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"ㄷ" 부분 토지 655㎡ 지상에 설치된 지장물 일체를 철거하라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"이 사건 부동산"이라 한다) 중 1/2 지분을 소유한 D 주식회사로부터 위 지분을 신탁받아 2018. 4. 17.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나.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 중 주문 제2. 나항 기재 부분 토지(이하 "이 사건 B 점유 토지"라 한다)를 지상에 주문 제2. 가항 기재 각 지장물(이하 "이 사건 B 설치 지장물"이라 한다)을 설치하여 점유하고 있다.

다. 피고 C는 이 사건 부동산 중 주문 제3. 나항 부분 토지(이하 "이 사건 C 점유 토지"라 한다)를 지상에 주문 제3. 가항 기재 각 지장물(이하 "이 사건 C 설치 지장물"이라 한다)을 설치하여 점유하고 있다.

[인정 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2, 3호증의 각 기재, 감정인의 감정결과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직권판단

이 사건 소 중 '지장물 일체를 철거하라'는 청구 부분은 철거대상물의 내용이나 범위가 불명확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, 원고가 이에 관한 재판부의 보정명령에 별달리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,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한다.

3.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

가.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대외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1/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완전히 취득한 후 보존행위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,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, 피고 B은 이 사건 B 설치 지장물을 모두 철거하고, 이 사건 B 점유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, 피고 C는 이 사건 C 설치 지장물을 모두 철거하고, 이 사건 C 점유 토지를 인도할

의무가 있다.

나. 이와 관련하여 피고들은 다른 공유자인 E종중으로부터 오래 전에 사용승낙을 받아 위 각 부분 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, 이에 기초하여 원고를 상대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,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위 종중으로부터 위 부분 토지를 임차하였다거나 위 부분 토지에 지상권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따라서 피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.

4. 결론

이 사건 소 중 '지장물 일체를 철거하라'는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고, 이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조승우

별지